#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11

발의연월일: 2025. 3. 11.

발 의 자:이학영·임호선·김성환

김교흥 • 한정애 • 안호영

김문수 • 정준호 • 문금주

김영배 · 전재수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탑승보조 서비스 등 '교통이용편의서비스'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규정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이용편의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통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7조를 위반하여 교통약자에게 교통이용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명 할 수 있다.

제29조의2제1항 중 "제29조"를 "제29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 항 중 "제29조"를 "제29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31조 중 "제29조"를 "제29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 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 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9조(시정명령) (생 략)	제29조(시정명령) ① (현행 제목		
	외의 부분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7조를		
	위반하여 교통약자에게 교통이		
	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		
	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		
	<u> </u>		
	기간을 정하여 교통이용편의서		
	비스를 개선할 것을 명할 수		
	<u>있다.</u>		
제29조의2(이행강제금) ① 교통행	제29조의2(이행강제금) ①		
정기관은 <u>제29조</u> 에 따라 시정	<u>제29조제1항</u>		
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			
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			
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을			
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			
강제금을 부과한다.	<b>.</b>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
⑥ 교통행정기관은 <u>제29조</u> 에	⑥제29조제		
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	<u>1항</u>		
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			
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			
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			

징수하여야 한다.

## ⑦ (생 략)

- 제31조(벌칙) 제11조를 위반한 자 로서 <u>제29조</u>에 따른 시정명령 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3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  - ② · ③ (생 략)

⑦ (현행과 같음)
제31조(벌칙)
<u>제29조제1항</u>
제33조(과태료) ①
<b>.</b>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
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
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